

지정감사인의 규모와 보수주의와의 관계

손 혁* · 정재경**

요약

최근 들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감사인 지정제도의 범위가 확대되고 2020년부터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중소 회계법인의 합병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규제당국이 지정감사인을 지정할 때 감사인의 규모를 선정기준에 포함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지정감사인의 규모와 보수주의 측정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감사인의 규모가 작을수록 지정기업의 보수주의 간에는 유의한 양(+)의 연관성이 있었다. 이 결과는 지정감사인의 규모가 크다고 반드시 재무보고의 품질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며, 규모가 작은 감사인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소송위험과 감사인 명성의 제고로 인해 보다 보수적 회계처리를 지정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규제기관과 감사인, 이해관계자에게 감사인 지정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핵심 주제어 : 감사인지정제도, 지정감사인, 보수주의, 감사인 규모

* 주저자,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부 부교수, hshawn@kmu.ac.kr

** 교신저자, 동명대학교 경영대학 금융회계학과 조교수, jgjung0905@tu.ac.kr

〈논문 투고일〉 2020. 5. 7

〈논문 수정일〉 2020. 5. 25

〈게재 확정일〉 2020. 5. 26

I. 서론

우리나라는 자유수입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91년부터 감사인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현 시점에 운영 중이다. 감사인지정제도는 감사인선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감리지적기업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대상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들어 규제당국은 2019년 11월부터 적용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의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여 감사인지정제도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주기적 지정제란 상장기업이 6년간 자유수입제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이후 3년간은 자유수입제로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규제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처럼 외감법을 개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자유수입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는 지금까지 감사인지정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정보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의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규제당국은 판단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감사인지정제도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동 제도가 감사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감사인지정제도의 유효성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주로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을 사용하였다(권수영 등 2004; 강선민·황인태 2007). 하지만 감사인지정제도가 지정기업의 보고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유의할 점은 감사품질의 대용치인 재량적 발생액이 작다고 해서 반드시 지정기업의 보고이익의 품질이 양호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정감사인은 초도감사를 수행하고 지정기업의 정보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감사실패위험을 낮추기 위해 보다 많은 감사노력을 투입할 것이다. 특히 보고이익의 품질을 나타내는 여러 측정치 중에서 보수주의(conservatism)는 지정감사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이유는 보수적 회계처리를 수행함으로써 감사인은 정보이용자의 소송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보험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이효익 등 2002). 따라서 지정감사인 입장에서는 대리비용(agency cost)이 현재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수주의를 선호할 것이다(Holthausen and Watts 2001). 즉 지정감사인은 소송위험을 낮추기 위해 보수적 회계처리를 수행할 것이다.

한편, 지정감사인은 규제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하며, 여기에는 감사인의 규모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2020년부터 도입되는 주기적 지정제를 적용받는 지정감사인의 범위를 일정 규모의 감사인에게 지정하려는 규제기관의 의도에 따라 최근 들어 소형회계법인이 합병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본 연구는 지정감사인의 규모에 따른 보수주의의 정도

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감사인지정제도가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중 12월말 법인인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 및 비지정기업 관련 재무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Ball and Shivakumar(2005, 2008) 외에도 Giboly and Hayn(2000)과 Feltham and Ohlson(1995)의 모형을 이용하여 다각도로 지정감사인 및 지정감사인의 규모과 보수주의의 관계를 확인했다. 표본대상기간 중 수집한 감사인지정기업은 총 587기업-연도이며, 비교대상기업의 총 표본 수는 13,678기업-연도이다.

실증 결과는 지정감사인의 규모가 작을수록 보수주의의 정도는 심화되고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정감사인의 규모가 작을수록 지정기업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소송위험(litigation risk)을 회피하고 대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보수주의 회계처리를 선호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감사인지정제도 및 보수주의에 관한 선행연구와 가설의 도출과정을 제시하고 제 3장에서는 연구방법론과 표본의 수집방식을 제공한다. 제 4장에서는 실증결과를 확인하고 제 5장에서는 감사인지정제도에 대한 논점과 결론을 맺는다.

II. 선행연구와 가설의 도출

감사인지정제도는 자유수입제의 단점인 독립성을 보완하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로 1990년부터 도입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주기적 지정제를 통해 상장기업의 경우 6년간 자유수입제를 수행하는 모든 기업의 경우 3년간 지정감사인에게 지정을 받도록 했다.

감사인지정제도의 유효성을 검증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주로 감사품질의 대응치인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의 수준과 크기가 지정 전에 비해 감소하거나 비지정기업에 비해 작음을 확인하였다(권수영 등 2004; 강선민·황인태 2007). 그러나 지정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작다고 해서 반드시 지정기업의 감사품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지정감사인은 초도감사이고 지정사유로 인해 지정기업의 정보위험(information risk)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정감사인은 많은 보수를 받는다(노준화 등 2003). 이러한 부분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감사품질이 양호하다고 재무보고의 품질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므로 재량적 발생액 이외의 재무보고 품질의 대응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김학운 등 2013).

보수주의(conservatism)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경제적 손실을 보다 빨리 반영하는 정도이며

(Basu 1997), 수익은 엄격한 인식요건에 따라 계상하고 비용은 가능한 조기에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Watts 2003). 보수주의는 기업의 다양한 내부,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기업의 사외이사의 비중이 크거나 독립적일수록 보수주의의 정도는 높아진다(Ahmed and Duellmam 2007). 이는 기업에 대한 감시(monitoring)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될수록 보수적 회계처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보수주의가 기업의 대리비용을 감소시키므로 보수주의는 재무보고품질을 향상시킨다(Ball and Shivakumar 2005; 지현미·문상혁 2006).

하지만 지정감사인이 지정기업의 보수주의와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하순금 등(2015)은 지정기업이 비지정기업에 비해, 지정기업의 경우 지전 전보다는 지정 중에 보수주의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¹⁾ 이는 지정감사인이 지정기업의 정보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감사실패위험을 낮추기 위해 보다 많은 감사노력을 투입한 결과일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감사인은 산업전문성이 높으므로 감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으며(박수연 2019), 높은 손해배상능력을 갖고 있어 정보이용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할 위험이 크므로, Big4에 해당하는 감사인은 보다 보수적으로 감사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Becker et al. 1998; 이효익 등 2002). 하지만 감사인의 규모가 반드시 감사품질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규모가 큰 감사인의 고객의 보고품질이 우수한 결과일 수도 있다(Lawrence et al. 2011).

또한 Non-Big4 감사인이 상장기업의 지정감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Non-Big4 감사인은 자신의 명성(reputation)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소송배상위험의 부담으로 인해 보다 보수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김학운 등 2013). 이처럼 지정감사인의 규모와 보수주의 간에는 대립되는 의견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 지정감사인의 규모와 보수주의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

Ⅲ. 연구방법론

1. 모형

본 연구는 다양한 보수주의 대용치를 사용했다. 첫 번째 모형은 Ball and Shivakumar

1) 하지만 하순금 등(2015)의 연구는 지정감사인과 보수주의의 관계를 Basu(1997)와 Ball and Shivakumar (2005)의 보수주의 대용치만을 가지고 확인하였으므로 좀 더 다양한 보수주의 대용치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05, 2008)의 모형이다. 이는 제시한 식 (1)과 식 (2)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TACC_{it} = & b_0 + b_1CFO_{it} + b_2DCFO_{it} + b_3DCFO_{it} \times CFO_{it} + b_4DESIG_{it} \\
 & + b_5DESIG_{it} \times CFO_{it} + b_6DESIG_{it} \times DCFO_{it} \\
 & + b_7DESIG_{it} \times DCFO_{it} \times CFO_{it} + b_8BIG4_{it} \\
 & + b_9DESIG_{it} \times BIG4_{it} \times CFO_{it} + b_{10}DESIG_{it} \times BIG4_{it} \times DCFO_{it} \\
 & + b_{11}DESIG_{it} \times BIG4_{it} \times CFO_{it} \times DCFO_{it} + \epsilon_{it} \quad (1)
 \end{aligned}$$

$$\begin{aligned}
 TACC_{it} = & b_0 + b_1CFO_{it} + b_2\Delta REV_{it} + b_3PPE_{it} + b_4DCFO_{it} \\
 & + b_5DCFO_{it} \times CFO_{it} + b_6DESIG_{it} + b_7DESIG_{it} \times CFO_{it} \\
 & + b_8DESIG_{it} \times DCFO_{it} + b_9DESIG_{it} \times DCFO_{it} \times CFO_{it} + b_{10}BIG4_{it} \\
 & + b_{11}DESIG_{it} \times BIG4_{it} \times CFO_{it} + b_{12}DESIG_{it} \times BIG4_{it} \times DCFO_{it} \\
 & + b_{13}DESIG_{it} \times BIG4_{it} \times CFO_{it} \times DCFO_{it} + \epsilon_{it} \quad (2)
 \end{aligned}$$

여기서,

TACC: 총 발생액을 전기총자산으로 나눈 값

CFO: 영업현금흐름을 전기총자산으로 나눈 값

DCFO: 영업현금흐름이 음(-)이면 1, 아니면 0

DESIG: 지정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BIG4: 대형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ΔREV: 매출액변화분을 전기총자산으로 나눈 값

PPE: 설비자산을 전기총자산으로 나눈 값

식 (1)의 b_1 과 식 (2)의 b_{13} 이 유의한 양(+) 또는 음(-)의 값을 갖는 경우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지정기업의 보수주의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 (3)에서 Giboly and Hayn (2000)과 Feltham and Ohlson(1995)의 보수주의 대응치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begin{aligned}
 CON_{jt} = & b_0 + b_1DESIG_{it} + b_2SIZE_{it} + b_3LEV_{it} + b_4CFO_{it} + b_5GROWTH_{it} \\
 & + b_6BIG4_{it} + b_7ALTMAN_{it} + b_8LOSS_{it} + b_9DESIG \times BIG4_{it} + b_k\Delta IND_{it} \\
 & + b_k\Delta YEAR_{it} + \epsilon_{it} \quad (3)
 \end{aligned}$$

여기서,

- CON*: 보수주의 대응치
- GHCON*: Giboly and Hayn(2000)의 모형, 즉 총자산에서 영업자산을 차감하여 전기총자산으로 나누어 -1을 곱한 값
- FOCON*: Feltham and Ohlson(1995)의 모형, 즉 1에서 장부가액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을 차감한 값
- DESIG*: 지정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 SIZE*: 기업의 자산의 자연대수값
- LEV*: 부채비율(=부채/자본)
- CFO*: 영업현금흐름을 전기총자산으로 나눈 값
- GROWTH*: 매출액성장률
- BIG4*: 대형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 ALTMAN*: Altman(1968) Z 값
- LOSS*: 당기 손실이 발생하면 1, 아니면 0
- IND*: 산업터미
- YEAR*: 연도터미

식 (3)의 b_9 가 유의한 양(+) 또는 음(-)의 값을 갖는 경우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지정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중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연도가 12월말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다. 금융업과 사업연도가 12월 말 이 아닌 기업을 제외한 이유는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재무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업은 제외했다. 극단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상하 1%의 표본을 제외했다. 재무자료의 수집은 NICE평가정보의 KIS VALUE를 사용했다. 분석대상 표본의 수는 총 13,678 기업-연도이며, 이 중 지정기업은 587기업-연도이다. <표 1>에서 연도별 표본기업과 지정기업의 수를 제시하였다.

〈표 1〉 표본의 산정방식

Panel A : 전체표본의 산정

표본산정과정	기업-연도
총 표본의 수	15,312
금융업을 제외하고 사업연도가 12월이 아닌 표본의 제외	(512)
극단치 제거와 재무자료를 구할 수 없는 표본을 제외	(1,122)
최종 표본의 수	13,678

Panel B : 연도별 표본수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기업표본수	1,096	1,279	1,354	1,387	1,355	1,410	1,449	1,465	1,452	1,431	13,678
지정기업수	46	65	69	88	68	41	46	52	66	46	587

IV. 실증결과

1. 기술적 통계량

〈표 2〉에서 본 연구의 기술적 통계량을 제시하였다. Giboly and Hayn(2000)의 보수주의 측정치(*GHCON*)과 Feltham and Ohlson(1995)의 보수주의 측정치(*FOCON*)의 평균(중위수)은 각각 0.3940 (0.3734)와 -0.2281(-0.1441)로 선행연구와 유사한 값을 갖는다. 지정기업(*DESIG*)은 3.83%이며 기업규모의 평균(중위수)은 18.4252(19.1431)이다. 부채비율(*LEV*)과 매출액성장률(*GROWTH*)의 경우 평균과 중위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왜도(skewness)가 존재할 수 있다. 표본 중 대형회계법인에게 감사받는 비중은 55.84%이고, 손실기업은 27.32%이다.

〈표 2〉 기술적 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제1사분위수	중위수	제3사분위수	최댓값
<i>GHCON</i>	0.3940	0.2548	-1.2350	0.2450	0.3734	0.5145	9.4661
<i>FOCON</i>	-0.2281	8.7255	-8.6331	-0.9416	-0.1441	0.3610	6.0611
<i>DESIG</i>	0.0383	0.1920	0.0000	0.0000	0.0000	0.0000	1.0000
<i>SIZE</i>	18.4252	1.4915	13.4369	17.391	18.1352	19.1431	25.398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제1 사분위수	중위수	제3 사분위수	최댓값
LEV	1.6279	20.8624	0.0000	0.3764	0.7861	1.4390	29.3261
CFO	0.0437	0.1840	-0.1361	-0.0165	0.0473	0.1149	3.4110
GROWTH	0.1731	2.1418	-0.4126	-0.0528	0.0751	0.2326	2.3418
BIG4	0.5584	0.4966	0.0000	0.0000	1.0000	1.0000	1.0000
ALTMAN	3.4049	24.8700	-1.5932	1.4005	2.3249	3.7318	28.7420
LOSS	0.2732	0.4456	0.0000	0.0000	0.0000	1.0000	1.0000
AREV	0.1005	0.5044	-13.6193	-0.0418	0.0598	0.2049	22.3131
PPE	0.1987	0.1707	0.0000	0.0793	0.1624	0.2755	0.7319

* 변수의 정의

GHCON: Giboly and Hayn(2000)의 모형, 즉 총자산에서 영업자산을 차감하여 전기총자산으로 나누어 -1을 곱한 값.

FOCON: Feltham and Ohlson(1995)의 모형, 즉 1에서 장부가액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을 차감한 값

DESIG: 지정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SIZE: 기업의 자산의 자연대수값

LEV: 부채비율(=부채/자본)

CFO: 영업현금흐름을 전기총자산으로 나눈 값

GROWTH: 매출액성장률

ALTMAN: Altman Z 값

BIG4: 대형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LOSS: 당기 손실이 발생하면 1, 아니면 0

AREV: 매출액변화분을 전기총자산으로 나눈 값

PPE: 설비자산을 전기총자산으로 나눈 값

2. 상관분석(Pearson)

〈표 3〉에서 Pearson 상관분석을 제시하였다. Giboly and Hayn(2000)의 보수주의 측정치(*GHCON*)과 Feltham and Ohlson(1995)의 보수주의 측정치(*FOCON*)와 지정기업(*DESIG*)의 상관계수는 각각 0.044와 0.06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다. 지정기업(*DESIG*)의 경우 기업규모(*SIZE*) 및 영업현금흐름(*CFO*)과 음(-)의 상관을 갖고 있다. 변수 간 상관계수는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위배할 정도로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표 3〉 Pearson 상관분석

	<i>GHCON</i>	<i>FOCON</i>	<i>DESIG</i>	<i>SIZE</i>	<i>LEV</i>	<i>CFO</i>	<i>GROWTH</i>	<i>ALTMAN</i>	<i>BIG4</i>	<i>LOSS</i>	<i>ΔLEV</i>	<i>PPE</i>
<i>GHCON</i>	1.000											
<i>FOCON</i>	0.044 <.0001	1.000										
<i>DESIG</i>	0.059 <.0001	0.031 0.000	1.000									
<i>SIZE</i>	-0.220 <.0001	-0.008 0.343	-0.035 <.0001	1.000								
<i>LEV</i>	0.019 0.019	-0.007 0.427	0.011 0.180	0.008 0.337	1.000							
<i>CFO</i>	-0.113 <.0001	-0.021 0.014	-0.106 <.0001	0.115 <.0001	-0.019 0.019	1.000						
<i>GROWTH</i>	0.078 <.0001	0.001 0.924	0.021 0.008	0.007 0.358	-0.004 0.665	0.013 0.098	1.000					
<i>ALTMAN</i>	-0.051 <.0001	0.020 0.036	-0.035 0.000	0.231 <.0001	0.012 0.194	0.060 <.0001	-0.015 0.106	1.000				
<i>BIG4</i>	-0.028 0.001	-0.003 0.680	-0.024 0.004	-0.020 0.016	-0.007 0.390	0.033 <.0001	0.003 0.685	0.012 0.233	1.000			
<i>LOSS</i>	0.143 <.0001	0.073 <.0001	0.147 <.0001	-0.192 <.0001	0.044 <.0001	-0.313 <.0001	-0.016 0.046	-0.077 <.0001	-0.018 0.035	1.000		
<i>ΔLEV</i>	0.324 <.0001	-0.009 0.269	-0.030 0.000	-0.015 0.062	-0.015 0.068	0.060 <.0001	0.251 <.0001	-0.002 0.790	0.008 0.367	-0.179 <.0001	1.000	
<i>PPE</i>	0.044 <.0001	-0.009 0.288	-0.007 0.394	0.180 <.0001	0.011 0.173	0.102 <.0001	0.089 <.0001	0.031 0.001	-0.030 0.000	-0.091 <.0001	0.227 <.0001	1.000

* 변수의 정의는 〈표 2〉를 참조.

3. 다변량회귀분석(가설의 검증)

(1) Ball and Shivakumar(2005, 2008)의 모형

〈표 4〉에서 Ball and Shivakumar(2005, 2008)의 모형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식 (1)의 b_{11} 과 식 (2)의 b_{13} 의 회귀계수(t값)은 각각 -1.5767(-8.97)과 -1.6251(-9.32)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다. 이는 지정기업의 감사인이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일 때 좀

더 보수적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일수록 지정기업의 투자자로부터 소송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다 보수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표 4〉 가설의 검증(Ball and Shivakumar 2005, 2008)

Variable	Ball and Shivakumar(2005)	Ball and Shivakumar(2008)
	Parameter Estimate(t-stat)	Parameter Estimate(t-stat)
Intercept	-0.0096*** (-3.52)	0.0047 (1.55)
<i>CFO</i>	-0.4040*** (-24.50)	-0.4294*** (-25.66)
ΔREV		0.0319*** (12.43)
<i>PPE</i>		-0.0742*** (-9.76)
<i>DCFO</i>	0.0018 (0.44)	-0.0019 (-0.47)
<i>DCFO</i> × <i>CFO</i>	0.1909*** (5.69)	0.2304*** (6.87)
<i>DESIG</i>	-0.0256** (-2.08)	-0.0257** (-2.10)
<i>DESIG</i> × <i>CFO</i>	-0.2873*** (-6.95)	-0.3062*** (-7.44)
<i>DESIG</i> × <i>DCFO</i>	0.0804*** (3.53)	0.0749*** (3.31)
<i>DESIG</i> × <i>CFO</i> × <i>DCFO</i>	1.9703*** (20.13)	1.9483*** (20.08)
<i>BIG4</i>	0.0118*** (4.64)	0.01244*** (4.93)
<i>DESIG</i> × <i>BIG4</i> × <i>CFO</i>	0.2709** (2.25)	0.34054 (2.86)
<i>DESIG</i> × <i>BIG4</i> × <i>DCFO</i>	-0.0675** (-2.15)	-0.0591** (-1.90)
<i>DESIG</i> × <i>BIG4</i> × <i>CFO</i> × <i>DCFO</i>	-1.5767*** (-8.97)	-1.6251*** (-9.32)
ΣIND	included	
$\Sigma YEAR$	included	
F-stat. (Adjusted R-Square)	177.62*** (14.39%)	169.22*** (15.91%)

* 변수의 정의는 〈표 2〉를 참조.

*, **, ***는 통계의 유의성이 각각 10%, 5%, 1% 수준임을 의미함.

(2) Giboly and Hayn(2000)과 Feltham and Ohlson(1995)의 모형

〈표 5〉에서 Giboly and Hayn(2000)과 Feltham and Ohlson(1995)의 모형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Giboly and Hayn(2000)의 보수주의 모형을 종속변수로 놓았을 때 b_9 의 회귀계수(t값)는 -0.0221(-1.9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졌다. 또한 Feltham and Ohlson(1995)의 보수주의 모형을 종속변수로 놓았을 때에도 b_9 의 회귀계수(t값)는 -0.5717(-2.21)로 역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졌다. 이는 Ball and Shivakumar (2005, 2008)의 모형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규모가 작은 지정감사인이 보수적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뜻한다.²⁾

〈표 4〉와 〈표 5〉의 결과를 종합하면, 규모가 작은 지정감사인이 보수적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지정감사인의 경우 감사위험이 큰 기업을 상대하므로 소송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규모가 큰 회계법인의 경우 소송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손해배상여력이 충분한 반면,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의 경우 지정기업의 청산이나 추후 규제기관의 감리로 인해 회계법인의 존속능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감사인의 경우 보다 보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소송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둘째는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의 감사인도 규모가 큰 회계법인만큼 전문성이나 경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의 구성원 중 상당수는 규모가 큰 회계법인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경험과 자질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정기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므로,³⁾ 규모가 작고 감사위험이 높은 기업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감사할 가능성이 있는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의 적격성이 보다 더 발휘될 수 있다.

〈표 5〉 가설의 검증(Giboly and Hayn(2000)과 Feltham and Ohlson(1995))

Variable	Giboly and Hayn(2000)	Feltham and Ohlson(1995)
	Parameter Estimate(t-stat)	Parameter Estimate(t-stat)
Intercept	0.8207*** (25.54)	0.9587*** (2.61)
<i>DESIG</i>	0.0631*** (4.07)	0.3960*** (2.24)

2) 지정기업과 비지정기업 간 보수주의 측정치에 대한 차이분석(t-test)을 실시한 결과, t값은 각각 Giboly and Hayn(2000)의 경우 -7.26, Feltham and Ohlson(1995)은 -3.63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3) 본문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지정기업과 비지정기업 간 보수주의 측정치에 대한 규모(SIZE)에 대한 차이분석(t-test)의 결과는 4.31로 비지정기업의 규모가 유의하게 작았다.

Variable	Giboly and Hayn(2000)	Feltham and Ohlson(1995)
	Parameter Estimate(t-stat)	Parameter Estimate(t-stat)
<i>SIZE</i>	-0.0301*** (-19.07)	-0.0787*** (-4.37)
<i>LEV</i>	0.0015*** (3.95)	-0.0000 (-0.02)
<i>CFO</i>	0.4244*** (23.27)	0.6702*** (3.22)
<i>GROWTH</i>	0.0445*** (23.33)	0.0406* (1.87)
<i>ALTMAN</i>	-0.0002*** (-3.17)	0.0009 (1.19)
<i>BIG4</i>	0.0051 (1.20)	0.1507*** (1.06)
<i>LOSS</i>	0.1028*** (19.53)	0.1892*** (3.15)
<i>DESIG × BIG4</i>	-0.0221** (-1.98)	-0.5717** (-2.21)
ΣIND	included	
$\Sigma YEAR$	included	
F-stat. (Adjusted R-Square)	75.59*** (20.57%)	21.30*** (6.58%)

* 변수의 정의는 <표 2>를 참조.

*, **, ***는 통계의 유의성이 각각 10%, 5%, 1% 수준임을 의미함.

V. 결 론

2020년부터 주기적 지정제도가 시행되면서 규제당국은 지정감사인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의 회계부정사건으로 인해 2019년 외감법을 미국의 회계개혁법안 수준으로 개정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유수입제를 보완하는 감사인지정제도의 유효성을 규제당국과 이해관계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기적 지정제도는 기업과 감사인 양측에게 우려를 낳고 있다. 기업의 경우 감사인이 강제적으로 교체되므로 감사인과의 유착이 사라지는 반면, 학습효과의 상실, 감사보수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감사인의 경우 특정 회계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즉 대규모 회계법인이 주기적 지정제의 감사인으로 대부분 선임될 수 있을 가능성을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은 우려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정감사인의 규모가 작을수록 재무보고의 품질의 대응치 중 하나인 보수주의에 유의한 양(+)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결과는 감사인의 규모가 우수한 재무보고 품질을 제공한다는 사회적 통념과는 다른 것이다. 물론 본 연구의 결과가 모든 재무보고 품질의 대응치를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규모가 작은 감사인의 경우에도 지정감사인의 소송위험을 회피하고 감사인의 명성을 제고하여 추가적인 감사의 기회를 잡으려는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감사인의 규모가 감사품질을 대변하는 것인지 또는 우수한 고객이 대규모의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주장(Lawrence et al. 2011)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규제당국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감사인을 지정할 때 고객의 매출이나 자산규모에 따라 걸맞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일정 규모의 공인회계사를 보유하기만 한다면 산업전문성이 있는 등 보다 적격성 있는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요건임을 암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2020년부터 시행되는 지정감사인의 선정기준을 규제기관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은 지정감사인을 적용받기 위해 합병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진다고 무조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며, 본 연구의 결과는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이 규모가 큰 회계법인에 비해 소송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수적인 감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규제기관은 감사인을 지정할 때 규모 외에도 감사인의 전문성, 경력, 회계법인의 감리위반 등 여러 제약요인을 반영하여 감사품질이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감사인 지정에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정감사인 선정 절차를 객관적으로 제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기간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전인 2010년까지이므로, 최근 들어 지정사유들이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둘째, 보수주의의 모든 측정치를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지는 않았다. 셋째, 보수주의 측정치 또는 가설을 검증하는 회귀모형의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양한 보수주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일관된 결과를 얻었으며, 지정감사인 제도의 범위 확대에 대한 논점을 제공하고 지정감사인 선정방식의 개선 등 감사인지정제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여할 것으로 본다.

즉 감사인지정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로 자유수입제 하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완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따라서 미래의 전문화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규제당국과 자본시장의 구성원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등 적격성의 유지는 물론, 감사인지정제도의 장점인 독립성이 발휘되도록 다양한 수단과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민, 황인태. 2007. 감사인 지정과 재량적발생액의 변화: 기업과 감사인의 역할. 회계학연구. 제32권 제4호: 115-150.
- 권수영, 노준화, 배길수. 2004. 감사인 지정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가? 감사인 순환과 감사인 유지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9권 제4호: 191-218.
- 김학운, 손혁, 이효익. 2013. 계속기업 특기사항과 보수주의. 회계저널. 제22권 제1호: 77-105.
- 노준화, 배길수, 전영순. 2003. 지정감사인이 더 높은 감사보수를 받는가? 회계학연구. 제28권 제4호: 177-202.
- 문상혁, 지현미. 2006. 소송위험이 감사시간과 감사인의 보수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제43호: 311-336.
- 박수연. 2019. 비감사서비스 및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 제43권 제1호: 33-53.
- 이효익, 정영진, 김한수, 문상혁. 2002. 보수주의 적용과 감사인간의 품질차이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제38호: 1-41.
- 하순금, 조용언, 박성환. 2015. 감사인 지정여부와 보수주의의 관련성. 회계저널. 제24권 제2호: 117-151.
- Ahmed, A. S., and S. Duellman. 2007. Accounting Conservatism and Board of Director Characteristics: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43(2-3): 411-437.
- Altman, E. 1968. Financial Ratios, Discriminate Analysis and the Prediction of Corporate Bankruptcy. *Journal of Finance* Vol.23 (4): 589-609.
- Ball, R. and L. Shivakumar. 2005. Earnings quality in UK Private Firms: Comparative Loss Recognition Timelines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39 (1): 83-128.
- Ball, R. and L. Shivakumar. 2006. The Role of Accruals in Asymmetrically Timely Gain and Loss Recogni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44 (2): 207-242.
- Basu, S. 1997. The Conservatism Principle and the Asymmetric Timeliness of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24(1): 3-37.
- Becker. C., M. DeFond., J. Jiambalvo, and K. Subramanyan. 1998. The Effect of

-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15 (1): 1-24.
- Feltham, J., and J. Ohlson. 1995. Valuation and Clean Surplus Accounting for Operating and Financial Activiti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11(1): 689-731.
- Givoly D. and C. Hyan. 2000. The Changing Time-series Properties of Earnings, Cash Flows and Accruals: Has Financial Reporting become More Conservativ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29(3): 287-320.
- Lawrence, A., M. Minutti-Meza, P. Zhang. 2011. Can Big 4 versus Non-Big 4 Differences in Audit-Quality Proxies Be Attributed to Client Characteristics? *The Accounting Review* Vol.86(1): 259-286.
- Holthausen, R. W., and R. L. Watts. 2001. The Relevance of the Value-Relevance Literature For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Set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31 (1-3): 3-75.
- Watts, R. L. 2003. Conservatism in Accounting Part1: Explanations and implication. *Accounting Horizons* Vol.17(3): 207-221.

Relationship between Designated Auditor Size and Conservatism

Hyuk Shawn* · Jae-gyung Jung**

ABSTRACT

Recently, the scope of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has been expand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nd a periodic designation system will be implemented from 2020. As a result, the merger of small and medium-sized accounting firms is appearing, because the size of the auditor is included in the selection criteria when the regulatory authority designates the auditor.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designated auditors and the proxies of conservatism.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isted companies in Korea from 2001 to 2010, the smaller the size of the auditor, the more positive (+) the association is between conservatism of designated companies.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size of a designated auditor does not necessarily improve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and a small auditor demands a more conservative accounting process from a stakeholder due to the risk of litigation and the reputation of the auditor. Our result provides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the designation of auditors to regulators, auditors and stakeholders.

Key Words : Auditor designation system, designated auditor, conservatism, auditor size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Business School, Keimyung University,
hshawn@kmu.ac.kr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Business School, Tongmyong University,
jgjung0905@tu.ac.kr